



의령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보

제849호 2023. 5. 31.(수)

선 람	기관의 장

고시

- 의령군 고시 제2023-79호 화정지구 등 4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
고시 2
- 의령군 고시 제2023-81호 도로명주소 고시 7

화정지구 등 4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(신규)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- 아 래 -

지구명	위 치	지정 내용			지정사유	비 고
		유형	등급	면적(㎡)		
정암지구	경남 의령군 정암리 96번지 일원	침수위험	나	642,616	남강 및 의령천 본류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가 불량하고, 정암배수장 능력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발생	
화정지구	경남 의령군 화양리 31-4번지 일원	침수위험	나	718,212	남강 본류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가 불량하고, 하폭 및 제방고 부족으로 인한 제내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지구지정	
죽전지구	경남 의령군 죽전리 500번지 일원	침수위험	나	41,447	죽전천, 대밭골소하천, 오동소하천 3개 하천 합류 후 병목현상 발생으로 월부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발생. 주민왕래가 잦은 마을도로 및 진입교량의 통수능력 부족 및 노후로 인한 원류 및 파손 우려 예방을 위한 지구지정	
백야지구	경남 의령군 득소리 792번지 일원	침수위험	나	19,013	백야천 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지구지정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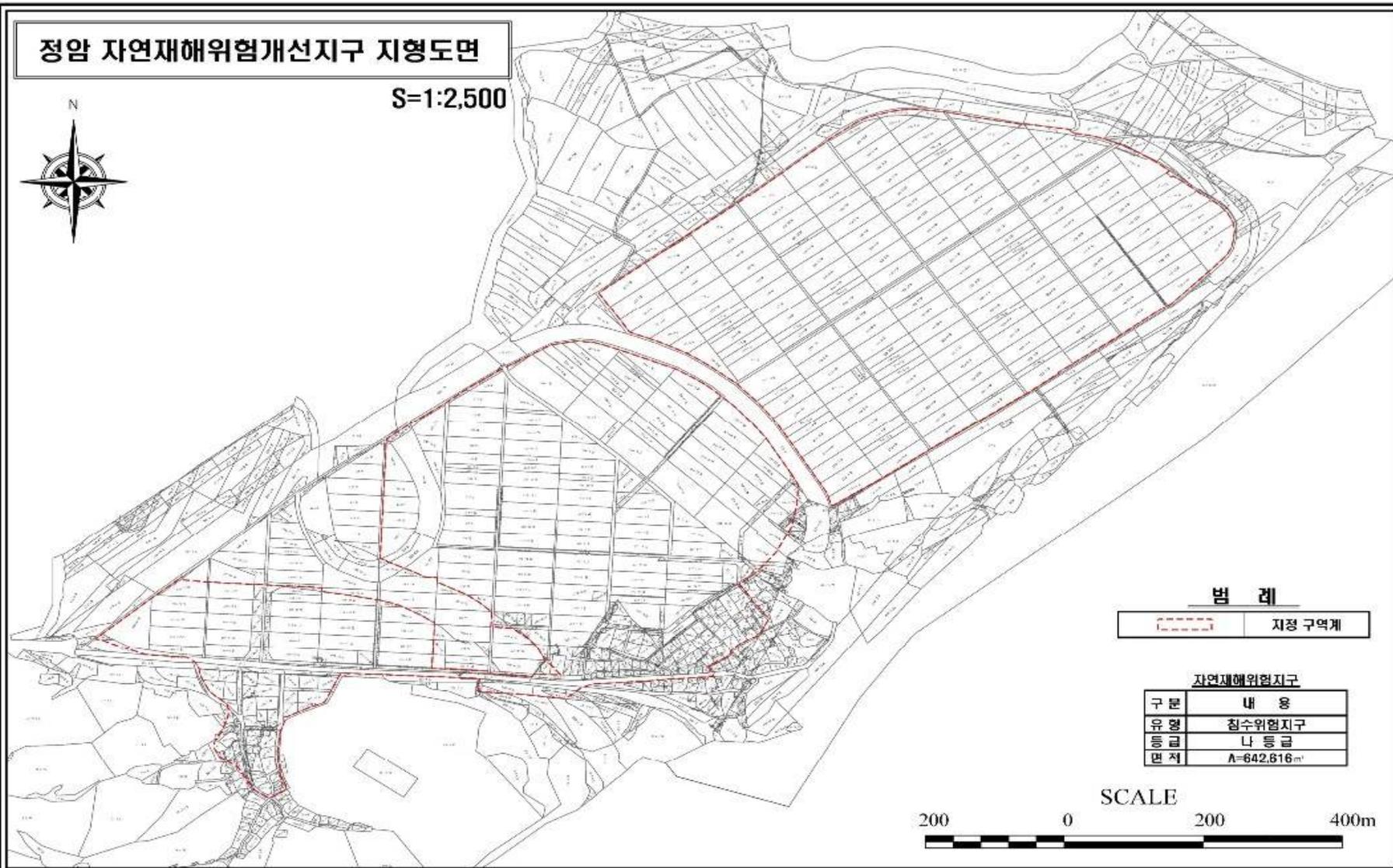
붙 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.

2023년 5월 31일

의 령 군 수

정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

S=1:2,500



범례

	지정 구역계
--	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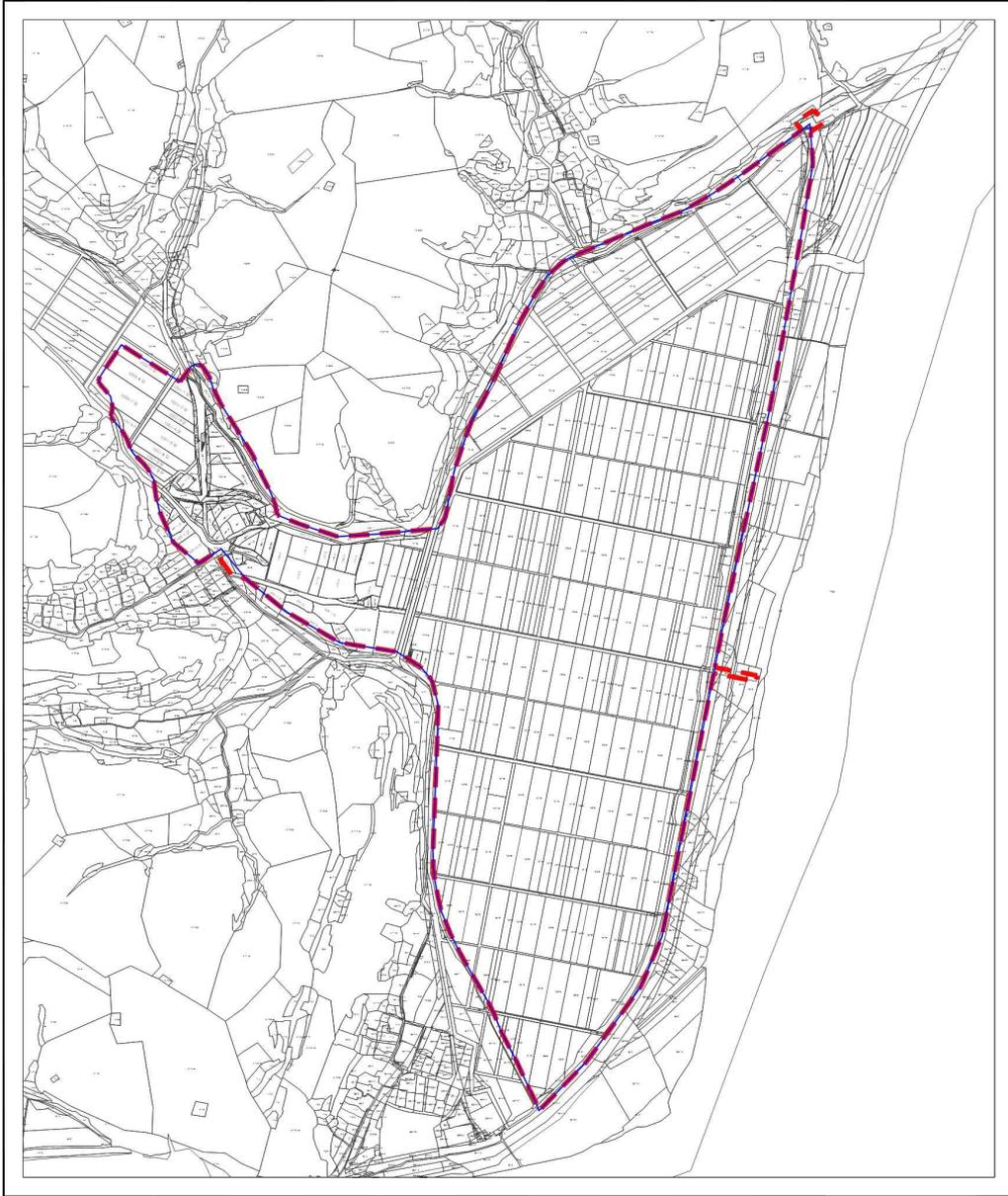
자연재해위험지구

구분	내용
유형	침수위험지구
등급	나 등급
면적	A=642,816㎡

SCAL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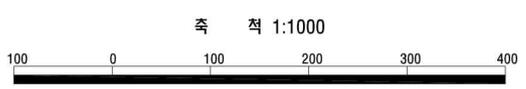
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지형도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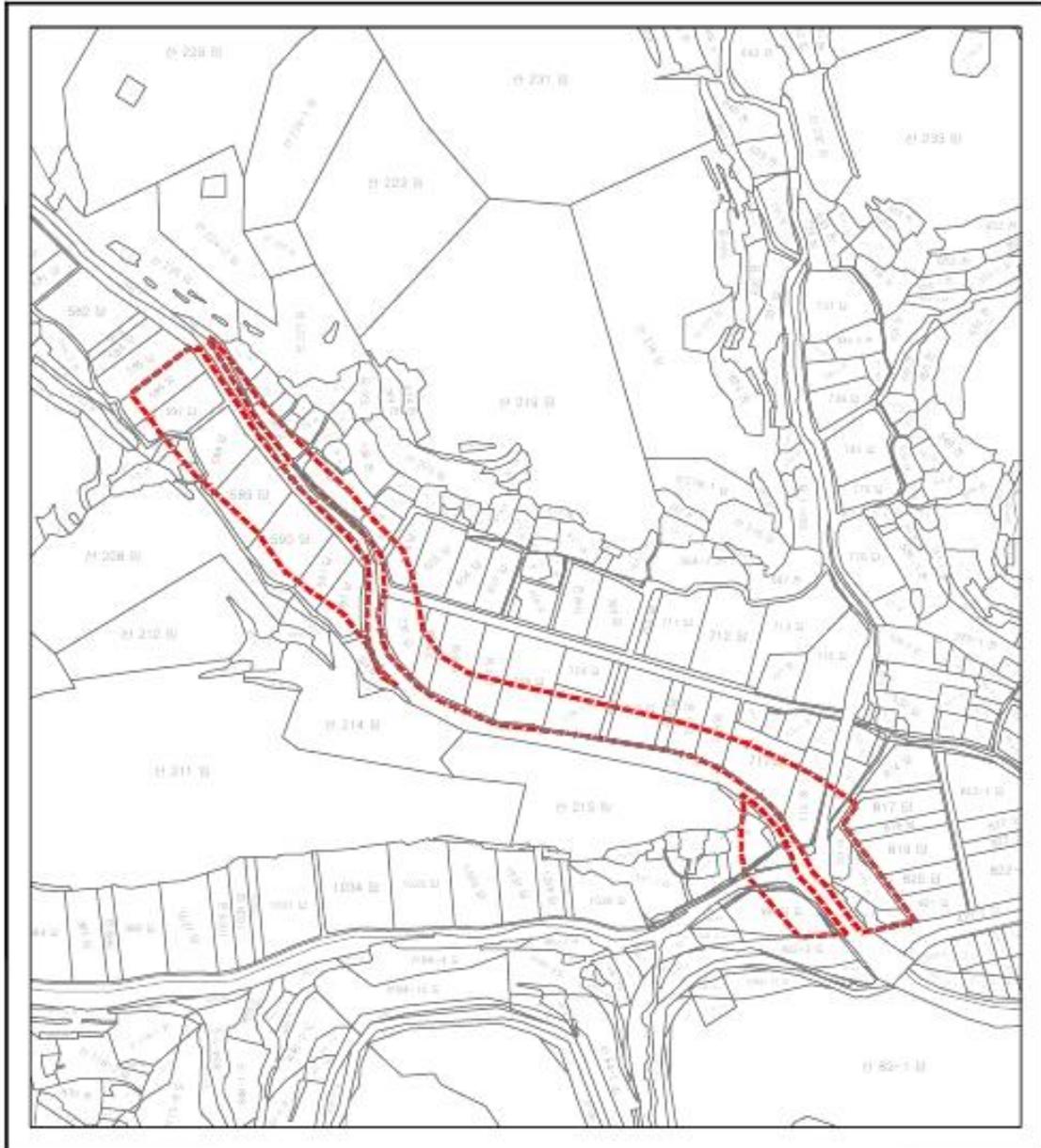
- 행정구역 : 의령군
- 지정권자 : 의령군수
-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의령군수

- 범례**
- 지적선
 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

- 명칭 : 화정지구
- 유형 : 침수위험지구
- 등급 : 나등급
- 면적 : 718,212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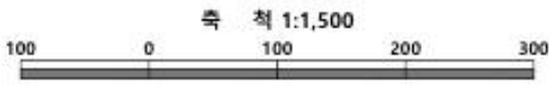
죽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지형도면



- ▣ 행정구역 : 의령 군
- ▣ 지정권자 : 의령 군 수
- ▣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의령 군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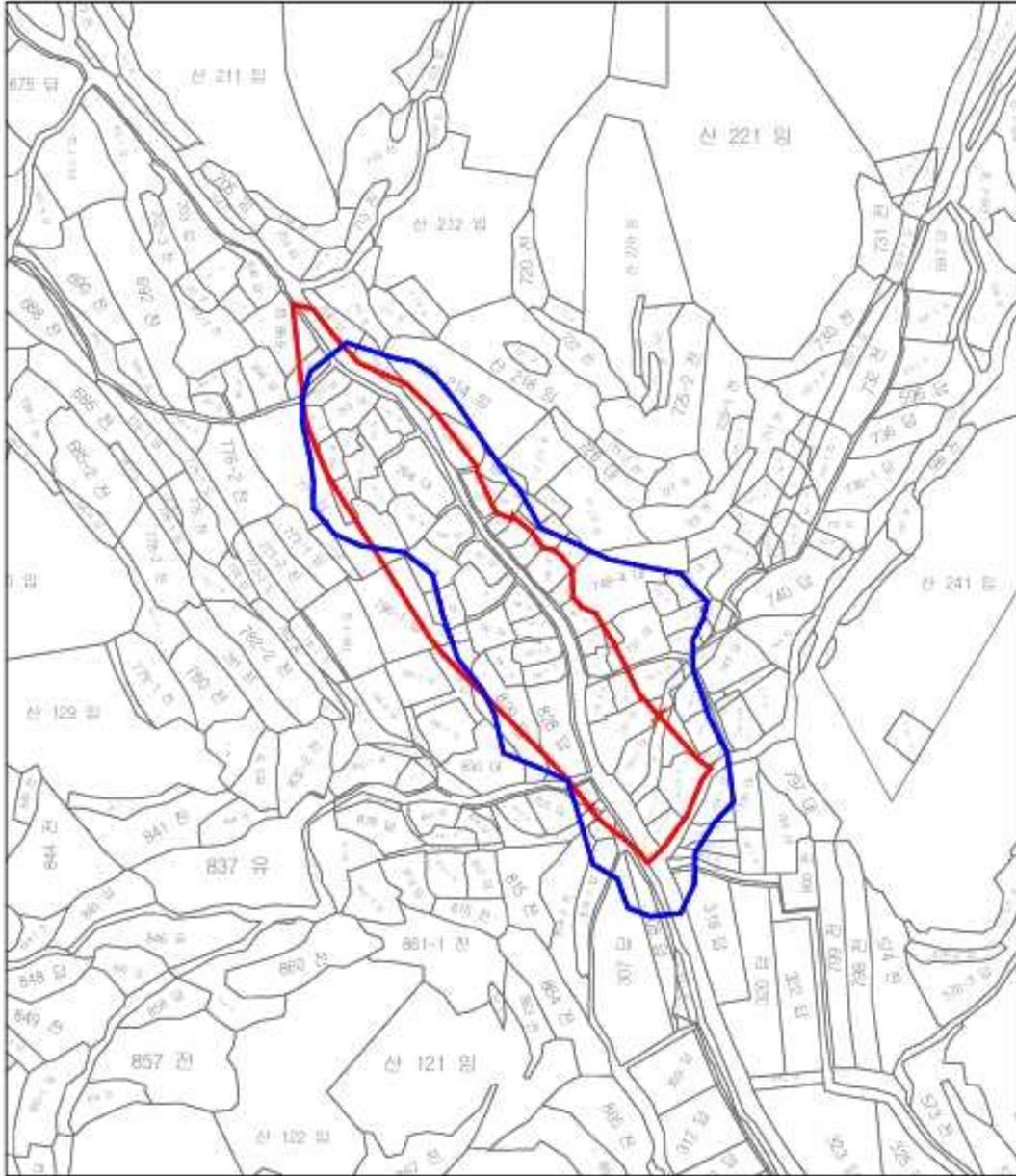
- 범 례**
- ▭ 지적 선
 - 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

- ▣ 명 칭 : 죽전 지구
- ▣ 유 형 : 침수위험지구
- ▣ 등 급 : 나 등급
- ▣ 면 적 : 41,447㎡



백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

S=1:1,000



- 범 레 □
- 자연재해위험지구
- 지적선
- 침수구역



지정권자 : 경상북도 의령군수
 지정일자 : 2023년 05월 00일
 고시년도 : 2023년 05월 00일
 고시번호 : 고시분 참조
 작성년월일 : 2023년 05월 00일
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의령군수

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 - 8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31일

의령군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: 경상남도 의령군 청정로 836 등 2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
별 지 참조			
폐지 도로명주소		폐지일자	폐지사유
별 지 참조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(☎055-570-2440)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1	경상남도 의령군 공류면 평촌리 1548-2	경상남도 의령군 공류면 청정로 836	2023-05-31	깨끗한 지역성
2	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554	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2길 19-38	2023-05-31	기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